

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21. 7. 30.

□ 개정 : 2021. 9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미래융합학부의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습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관장한다.

③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센터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
① 성인학습자 대상 교수자 교육역량 강화 지원

② 미래융합학부 교육 품질 관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 교육 환류 지원

③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

④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수학습자료(이러닝 자료 포함) 개발 지원

⑤ 성인학습 학업·심리 지원

⑥ 성인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⑦ 성인학습 관련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원

⑧ 기타 성인학습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

제4조(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업무담당자로 한다.

제6조(환류)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7-1-31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㉔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다음 학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㉕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